

2025년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

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(창업 3년 이내)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『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지원사업』의 지역특화형 민간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02월 20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

1. 모집개요

① **(사업목적)**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음·복합 분야 등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초기 청년창업자(3년 이내 기업) 대상 창업 쏠단계 패키지 지원

② **(모집지역)** 전국 4개 지역 4개소(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·신청)

모집 지역 (입교자 정원)	서울 (115명)	인천 (35명)	대구 (40명)	울산 (30명)
학교 소재지	양천구 목동	연수구 송도동	남구 대명동	남구 삼산동

③ **(운영사 역할)**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·코칭, 네트워킹,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

○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*

* 사업비 예산(2024년 기준) :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00만원 내외

④ **(위탁기간)** 1 + 1 + 1년(최대 협약기간 3년)

○ 최종선정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,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'우수' 이상 달성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

2. 신청 자격

- ① **(신청자격)** 초기 청년창업자(3년 이내 기업)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, 대학, 공공기관 등
- **(민간기업(단체))** 기술사업화 전문회사* 등 민간기업 및 협회·단체
 - * 기술지주회사[산학협력법], 신기술창업전문회사[벤처기업법],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(AC)[벤처투자법] 등
 - **(대학)** “고등교육법 제2조”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“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”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
 - **(공공기관)** 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”의 각 호 및 “지자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”에 해당하는 기관
- ⇒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,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
- 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

※ (공통사항: 컨소시엄 불가)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⇒ 단독 입찰만 가능

- ② **(신청제한)**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
-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(기업)(징수유예 포함)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

-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
- 교육부의 “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”에 해당하는 대학
-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(기업)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(기업)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신청 요건

- ① **(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)**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·코칭, 네트워킹 외 지역(유관기관, 앵커기업 등)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
- ② **(전담조직)**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,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
 - (구성) 사업관리자(PM) 1명,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*으로 구성
 - * (예시) 100%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: 최소 10명 ~ 최대 15명
 - (인력)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,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%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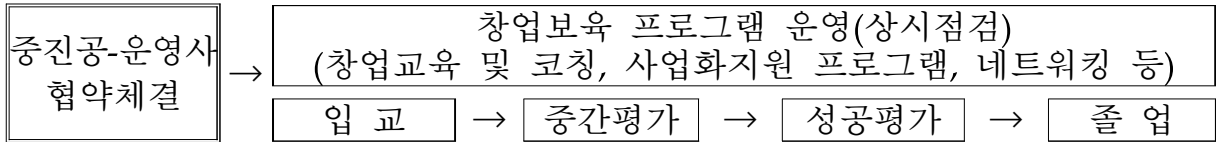
<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(예시) >

청년창업사관학교 (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)			
창업교육 및 코칭	사업화 지원 프로그램	특화 프로그램	지자체·유관기관 등 협업 프로그램
·CEO 역량 강화 교육 ·S-CoP(분야별, 지역별) ·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·입교자 사업화 코칭	·BM 고도화 ·해외진출·판로개척 ·국내외 거래처 발굴 ·사업화 네트워킹 등 ·투자유치, M&A 등	·지역주력산업 멘토링 ·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·제조용·복합지원	·지역 전문기관 교육 ·사업진도 코칭 ·기술자문 ·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

4.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

<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>

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



② 특화프로그램

-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(선배기업 등)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, 제조음·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

③ 지자체·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

-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 기관 교육, 사업진도 코칭,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

1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

① 창업교육 및 코칭

- ◆ 운영사 강점분야(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) 특화교육
- ◆ 사업화 전개를 위한 S-CoP(분과 모임) 및 특화코칭 운영 등

○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

-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 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

○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-CoP(Start-up Community of Practice)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

- 유관업종, 입교자·졸업자간,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

* 분야별 월 2회 이상,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

○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(주 1회 이상)

-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,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쏠과정 코칭

○ **특화 코칭 운영**(월 4회 이상)

- 경영분야별(마케팅, 세무회계, 법률, 투자 등)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·외부 전문가 코칭

*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(ex)4~5명 수준)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

②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

- ◆ 비즈니스 모델(BM) 고도화 및 제품개선
- ◆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
- ◆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

○ **BM 고도화 및 제품·서비스 개선**

-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·분석하여,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

○ **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**

-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(재)설정,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, 매출·고용·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

*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·확정 후,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, 운영사 평가시,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

○ **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**

-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(GBC, KSC 등) 활용 방안/IR 피칭, 멘토링, 데모데이(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)

③ 네트워킹 프로그램

- ◆ 입교·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
- ◆ 유관기관 교류
- ◆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

○ **입교·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**

-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(회)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·운영,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

○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

-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(창업센터, TP, 대학 등) 및 민간(AC, VC 등)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

○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

-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, 운영

* (예시) ① 지자체·유관기관 협업(기술별, 업종별, 단계별 등), ② 앵커기업 협업 (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) 등

②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

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(매월)

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,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

*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

③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

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

-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,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
-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,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
-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

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, 사후관리 등

-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, 분류,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
-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
-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① (신청기간) 2025.2.20.(목) ~ 2025.3.4.(화) 12:00 까지

② 신청방법

-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(kosme-21@kosmes.or.kr)
- (제출서류) 신청공문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,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 각 1부
 - * 신청공문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 직인을 반드시 날인함
 - *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선정 취소될수 있음(필요시 소명자료 요청할수 있음)

5.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

① 선정평가 절차

- ① 서류평가 → ② 발표평가 → ③ 현장확인(필요시) → ④ 사업운영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

※ 서류평가 점수 40%, 발표평가 점수 6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- (①서류평가)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,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,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

*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~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

**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% 미만(24점 미만)인 경우 탈락 처리

- (②발표평가)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,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,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,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

* 기관의 대표자(대표이사 등)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, 전문가 질의응답 10분

- (③현장확인) 발표평가 후,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

* 현장확인 결과, 사업계획서 상 과장·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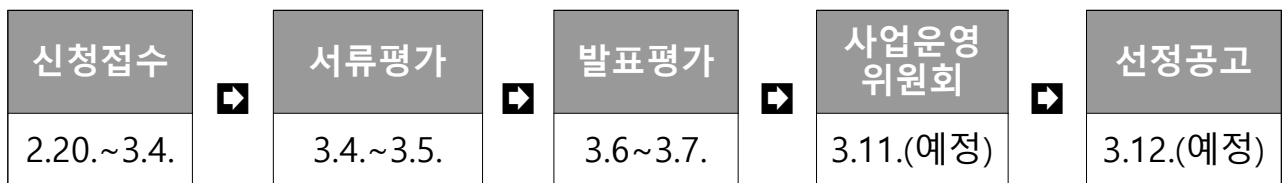
- (④사업운영위원회) 서류·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·선정

* 심의결과,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

< 선정평가 운영절차(안) >

평가단계	평가 내용
서류평가 (40%)	•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(2~4배수 내외 추천)
↓	
발표평가 (60%)	•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
↓	
현장확인 (필요시)	•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
↓	
사업운영위원회	• 운영사 심의·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
↓	
최종선정	• 선정공지 및 안내

2 추진일정



*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유의사항

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
-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, 신청접수기한(2025.3.4.(화) 12:00)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, 제출 이후에는 일체 수정불가
-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 - *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,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

7. 문의 및 접수처

①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: 055-751-9834, 055-751-9856

② 접수처

- 이메일 제출: kosme-21@kosmes.or.kr

- 【붙임】** 1.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
 2.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